

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	확인 내용	법 조항
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① 붐길이·각도 센서 ② 인출와이어·체인 ③ 작업대 안전난간 붐과의 연결부분 ④ 작업대 로드셀 ⑤ 아웃트리거 확보 ⑥ 메인컨트롤러 ⑦ 모멘트 감지장치	☐ 「산안법」 안전인증·검사 유무 - 단, 안전검사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3호, 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한정* * <제외> ① 테일 리프트(tail lift), ②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, ③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, ④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소방장비, ⑤ 농업용(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에 따른 고소작업차) ※ <참고>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, 이후 2년 마다 ☐ 과부하 등 안전장치*의 정상작동 여부 및 작업대 고정볼트 풀림·탈락 여부 등 ※ 붐 길이·각도 센서, 과부하방지장치, 모멘트감지장치, 등 ☐ 제원을 고려한 차량 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여부,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등 ☐ 바닥과 수평 유지 및 아웃트리거 사용 ☐ 작업대 (전면)안전난간 등 정상 설치 여부	☐ 산안법 제84조, 제93조 ☐ 안전보건규칙 제36조 ☐ 안전보건규칙 제38조, 제39조 ☐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☐ 안전보건규칙 제186조

점검 항목	점검 결과(적정 여부, 조치 사항 등 기재)
1.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 계획 수립	
2.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절차 준수	
3. 작업 전 장비 이상 유무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	
4. 작업 지반의 침하 및 경사 여부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 조치	
5.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	
6.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및 협착·충돌 등 위험 방지 조치	
7.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작업 전 안전회의(TBM) 실시	
8.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후 작업 실시 등	